



濁流淸論

제2호 2009년 9월 25일(금)

발행인 : 이일영 / 편집 : 홍보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아주대학교 총장선임 규정(안)

공청회 알림

- 일시 : 9월 30일 수요일 5시
- 장소 : 율곡관 대강당
- * 간단한 다과를 제공합니다.

◇ 현수막 시위 소식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매일(월요일-금요일) 11시 45분부터 12시 45분까지 한 시간씩 두 분의 교수께서 우리의 주장을 재단과 학교 측에 알리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현수막 시위에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 교수님들께서는 교수회사 무실(구내 2240) 또는 이메일(makim@ajo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총학생회 알림 요청

본교 배정훈 학생(자연대 4학년)이 해비타트 봉사활동 후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경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인근 건양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걸쳐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본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상태로 회복의 정도는 경과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험적용에 문제가 있고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모든 아주인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뜻있는 분은 아래 계좌로 정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632-20-360992 예금주: 배정훈

< 목 차 >

제 2호를 발간하며...	1
교수회는 왜 현수막을 들고 있는가?	1
같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아주 독재시대의 개막	4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회(안)	5

제 2호를 발간하며 ...

교수회 홍보위원회

탁류청론 제 1호를 선 보인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는 현수막 시위를 시작한지 100일이 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방학 기간 내내 현수막 시위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노력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현 서문호 총장의 임기도 채 6개월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입 총장 선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학내 현안 때문에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논의를 늦출 수 없어 교수회에서는 학내 현안의 진행과는 별도로 총장선임 규정(안)을 마련하고 학내 제 단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내용과, 학내 현안 관련 글 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총장선임 규정(안) 공청회 안내

- * 일 시 : 2009년 9월 30일 오후 5시
- * 장 소 : 율곡관 대강당
- * 대 상 : 아주대학교 구성원 전원
- * 프로그램

5:00 개회사-아주대 교수회 의장

5:10-6:20 총장선임규정(안)

발표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고병수(직원노조 지부장)

송응준(의료원노조 지부장)

이범재(아주대 전 총동문회장)

최인규(아주대 총학생회장)

6:20-7:00 청중 질의 응답 및 토론

7:00 폐회-사회자

교수회는 왜 현수막을 들고 있는가?

교수회 홍보위원회

9월 2일로 현수막 시위를 시작한지 만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현수막 시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것이 '교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단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탁류청론 1호 "현수막 시위를 시작하며").

15 2페이지에 계속

그 때도 이 시위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막상 2학기가 시작된 이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11시 45분부터 12시 45분까지 매일 1시간 씩 가장 적을 때는 2명이, 그리고 많을 때는 10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율곡관 1층 로비에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내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돌아오는 시위 당번(?) 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교수님들, 거의 매일 출석하다시피 하면서 시위 당번 교수들을 위문하여 주신 교수님들, 대략 40여 분의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위를 진행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문을 던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현수막 시위를 하면서 마음속에 품게 된 단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은 우리들의 행동이 무척 중요함을 느끼게 된 사연입니다. 현수막 시위에 직접 참여 하였거나 시위 장면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수막의 길이가 꽤 길입니다. 양 쪽 끝에 나무 막대기를 대고 팽팽히 당기면서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길이가 긴 관계로 현수막의 중간 부분이 기울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현수막 뒷면에 등뼈 역할을 하도록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덧대고 테이프로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부분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현수막 전체가 잘 퍼져서 찢어진 문구를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등뼈가 되었던 가느다란 막대기, 그것이 우리의 시위가 갖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수막 면적 전체에 비한다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막대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 현수막의 모양이며 가독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 막대기는 우리 아주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있

어 지켜져야 할 원칙과 가치를 재확인 하는 교수들의 문제 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사회는 소통이 부재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또한 소통을 이루는데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사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우리사회에 만연해있을까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공유하고, 제도를 지키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큰 차이가 없을 것임으로 소통은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교수 임용의 과정은 어떠한가? 정교수 보장은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사계의 권위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과 재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대학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총장은 어떠한 경륜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박종구 전 차관, 학교본부, 재단 이사장, 그리고 교수회 사이에 대학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현수막 시위 외에 다른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나 아직은 결실이 없습니다. 그 결실을 기대하며 현수막 시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주대학이 3류 대학이나 어울릴 듯한 스캔들에서 벗어나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과 회복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김광섭(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지난 학기 초, 총리나 장관급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오랜만의 거물급(?)인 박종구씨를 위하여, 총장, 이사장을 위시한 본부의 몇몇 처장들이 동대문시장에 급매물 내놓듯 원매자를 찾아 학내의 여러 부서의 문을 두드려왔다. 당시 나는 당사자는 물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論語」의 「顏淵」編 중에서] (군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며, 또 말하거나 행하지도 말라)

교수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를 외치고, 급기야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작금에 이르러서도, 매듭이 풀리기는 커녕 점점 더 실타래처럼 얼키고 설키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아주대학에서 30여년을 몸담고 있는 선임 교수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박 전 차관, 총장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들께 외람되게 꼭 드리고 싶은 고언 중의 하나가 바로 위와 같은 공자(孔子)님의 말씀이다.

특히, 정책의 결정뿐 아니라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도, 이번 사태해결에 있어 중심에 서 있는 총장은 ‘세월이 약(藥)’이라고 숨어있지 말고, 공자님의 귀중한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총장직은 한 대학의

운영에 있어 참모나 실무자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

먼저, 총장의 진솔한 고백이 필요하다.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직관료들,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외(특히, 대정부) 로비스트로 영입할 수 밖에 없었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임명권자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절차상의 위법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고백하고, 각각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군자(君子)가 취하는 올바른 예(禮)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위의 어느 것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교수가 지적한 대로 ‘무능’ 혹은 ‘직무유기’의 소치가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한 사람의 고위 전직관료가 정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후 자신이 십 수 년 전에 근무하다가 의원 면직 하였던 직장에, 개신장군처럼 복귀하는 절차가 왜 그리 구차스러웠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봉직했던 학부에서 초차 거절당한 것은 물론, 받아 줄 것을 찾아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방황한 끝에 전공과도 무관한 부서에, 그것도 지원서도 없이, 정년보장의 정교수에다가 위인설관격(爲人設官格)인 부총장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연구실적도 전무한 상태에서, 절차도 무시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 갑자기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군자가 말하는 ‘옳지 않은 행위(非禮勿動)’가 아니고 무엇인가? 절차상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셈인가? 이러한 구차한

행위를 지시한(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한) 총장 또한 우리 대학의 존경받는 최고경영자라 할 수 있겠는가?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라는 말을 냉철히 고민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원칙은 벗어난 편법은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더 커다란 편법을 낳는 법이며, 이를 용인하는 조직이 무질서한 작동사니 구멍가게로 전락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 왔다. 법인의 정관과 학칙을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속에서도 아주가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할 총장과 이사장의 리더십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우리 대학의 현실이 그러한 대(對) 정부 로비스트가 꼭 필요하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전직 공무원이, 바로 자신이 근무하였던 혹은 연고관계가 깊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일 자체가 교직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비례(非禮) 중 하나이며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일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인사를 특별 채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칭 ‘3류 대학’으로 가는 첩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일을 자임하고 나선 분이나, 임용을 제청한 분이나 모두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털어 놓는 것으로 부터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기를 바란다.

길이 아니면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되며,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 순리이며 상식이다. 이들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아주동산이 하루 빨리 찾아 오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8월 28일에 제277차 재단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회의록 중에서 아래의 내용을 발췌하여 교수님들께 회람합니다.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 30~40년 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회의록-

제 7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사장 : ...다만, 총장님께서 제청하신 인문대학의 A교수는 재단과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인물로서 이러한 성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제기>

향의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이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며, 학교 및 관리 측면을 부인하는 사람이 학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에 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 이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A교수를 인문대학장으로 제청한 것은 인문대학의 추천후보 중 A교수가 직무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교양학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과 주장이 강하여 제청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여러 성향의 교무위원이 있어야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 (편집자 주) 277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호에서 다루는 인사 관련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3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000이사: 본인이 재단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는데도 학장의 보직을 임명하는 것은 이사회가 그러한 행위를 양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장이 되면 학장의 임기 동안에는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서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 알겠습니다. 본인을 만나서 서약을 받겠습니다.

B교수의 승진 임용건

이사장: 중략... 그런데 승진 임용 제청된 C 교실 B 부교수는 승진 임용시켜야 합니까? B 부교수는 재단과 이사회를 부인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사회와 재단에 승진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요? 본인이 승진 신청을 하였습니까?

의무부총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사장: 이런 경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외부에서는 재단과 이사회를 부정하는 언행을 하면서 개인문제에서는 이사회에 승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승진 임용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

아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000이사: 교원 임용 자격은 충족하였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2000년대 초 학내 사태 때 의과대학 교수 2인의 승진이 이사회에서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의대 교수들 거의 전원이 윤원석 이사장을 고발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이사회는 이사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인문대학장에 의하면, 이사회 이후 총장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직자로서 교수회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 A교수는 인문대학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교수회 대의원이었으며, B교수는 의과대학의 교수회 대의원으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재시대의 개막

이순일(자연과학부 교수)

지난 주 중에 공개된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의 제 277차 회의록은 가히 충격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족벌사학에서나 볼 수 있는 소위 ‘재단에 밭보인 교수는 승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이사장은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의료원 한 교원의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제청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승진 임용시켜야 합니까? 재단과 이사회를 부인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사회와 재단에 승진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요?” “외부에서는 재단과 이사회를 부정하는 언행을 하면서 개인문제에서는 이사회에 승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대학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의 원칙을 훼손시킨 이사장과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재단과 이사회를 부인하는 행위’인가? 이는 마치 지난 시절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행위’로 처벌하던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이사장이 교수승진에 시비를 건 의료원 교원은 교수회 대의원으로 ‘상식이 통하는 대학, 정도를 걷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을 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 투쟁에 나선 인사들을 ‘반국가적 인물’로 낙인 찍어 핍박하던 모습의 재현일 따름이다.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있어 승진에 충분한 실적을 쌓아 엄정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교수로의 승진은 당연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또한 규정된 승진절차를 떠나 재단과 이사회가 자의적이고 시혜적으로 교수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 듯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의 오만이고, 교수회가 지적하고 있는 ‘이사장이 대학행정을 농단’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사장의 이런 횡포에 대해 맞서지 못한 총장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승진시비 건의 발단이 된 박종구 전 차관의 부총장 임명과 정교수 임용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대학원 교수로 정년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총장이, 이번에 자격을 갖춘 교수의 승진에 대해서 이사장이 터무니없게 문제를 삼는 상황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총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인문대학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임명 제청된 교원에 대하여 “재단과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인물로서 이러한 성향의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학교 및 관리 측면을 부인하는 사람이 학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와 같이 발언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의 제규정과 질서를 존중하고 학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한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임명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서약을 총장께서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인문대학장은 교수회 대의원으로 박종구 전 차관의 부총장 임명과 정교수 임용 건과 관련한 진장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분이다. 이런 분을 ‘재단과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성향의 교수’로 분류하고, 나아가 자의적으로 ‘학교를 부인’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을 사랑하기에 ‘상식이 통하는 대학, 정도를 걷는 대학’을 만들고자 노력하신 분을 동료 인문대 교수들도 신뢰하여 학장 후보로 추천한 것인데, 이사장은 이런 분을 ‘학교를 부인한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 측면’이라는 표현은 무얼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교수들이 이사장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관리가 잘된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말이라면, 이야 말로 이사장 본인이 대학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언사이다. ‘질서를 존중’한다는 말도 이사장은 왜곡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에게는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교수회의 활동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독재자들이 민주화를 갈망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사용하던 ‘사회질서 확립’과 어찌 면 이리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보직 후보자들과는 달리 인문대학 학장 후보에게만 ‘서약을 받으면 임명동의 할 수 있다’고 한 이사장이나, 이를 따르겠다고 한 총장의 발언은 우리 아주대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전향서 작성 강요’ 또는 소위 ‘녹화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시절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주대학에 철 지난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줄은 몰랐다. 독재에 침묵하고 굴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를 남의 일이라 비켜서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그 막무가내의 몰상식과 폭압이 내게 닥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작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듯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못한 일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학이 정도에서 벗어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는 타락한 곳이 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상식과 정도를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회(안)

1.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가. 제안 이유

- 아주대학교 총장 임명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1항은 총장 임명과정에서 대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함.

- 이미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일회적인 것이어서 이를 ‘규정’으로서 제정함으로써 향후 총장 임명절차에 근거로 삼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의 교수대표 추천단위를 단과대학 외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부 포함)과 그 외 대학원 등을 각 1개 단위로 하여 총 10개 단위로 함.

나) 법인으로 하여금 재임 중 총장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법인대표 5인을 추천위원회에 새로이 포함하고, 지역공익대표 위원을 2인으로 함.

라)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별도 양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총장후보대상자의 추천요건을 다소 강화함.

바) 추천위원회의 총장후보자의 결정과정과 총장의 임명과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사)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의 제청권을 부여함.

2. 구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안)’ 및 타 대학 비교

가.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안)’ 과 비교표

항목		재단안(과거)	아주대-교협- 제 단체 협의안 (2001년)	교수회 2009년 규정(안)
자격	본교교수	10년이상 재직, 대학원장, 학장 또는 처장 경험	소양과 덕망, 경륜, 경영능력 겸비	소양과 덕망, 경륜, 경영능력 겸비
	외부인사	위와 동등 이상의 능력		
후보자 상자 추천	본교교수	2개 이상 단과대학, 전임교원 30인 이상 추천	2개 이상 단과대학. 전임교원 15인 이상 추천	2개 이상 추천단위, 전임교원 20인 이상 추천
	외부인사	2개 이상 단과대학. 전임교원 15인 이상 추천	2개 이상 단과대학 전임교원 5인 이상 추천	2개 이상 추천단위, 전임교원 10인 이상 추천
총장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교수	7인(단과대학별 각 1인)	7인(단과대학별 각 1인)	10인(추천단위별 각 1인)
	법인	-	-	5인
	직원	2인(학교/병원 각 1인)	2인(학교/병원 각 1인)	2인(학교/병원 각 1인)
	동문	1인	1인	1인
	지역공익	1인	1인	2인
	학생	-	1인(참관인)	1인(참관인 자격: 추후논의)
	합	11인	12인(투표권 11인)	21인(투표권 20인)
후보자추천		2인	3인	3인(예외; 2인 이하인 경우)
이사장 거부권		1회	없음	없음(단, 2인 이하 추천시 1회 인정)

나.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사립대학

항목	고려대		전국대		서강대	
자격 및 후보 대상자 추천	공통	소양과 덕망/ 건학이념,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원리 존중, 국제적안목과 경영능력	공통	소양과 덕망/건학이념 존중/국제적안목과 경영능력/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하유 없는 자	공통	가톨릭 신자/ 홍익인간 예수회교육이념 구현/ 경영능력/ 학문적, 도덕적, 인격적 기준 충족
	본교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임교원 50인 이상 추천		본교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임교원 20~30인의 추천		본교 교직원, 예수회원, 또는 동문 20인 이상 30인 이하	
	교내외 인사로서 전임교원 및 교우회 임원 500인 이상의 추천		대학총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		초빙위의 추천	
	총추위 4인 이상 추천				본교 보직을 맡고 있을 경우, 공모 마감 3주 전에 그 직을 사임	
	정해진 유관기관과 저명인사에게 추천 의뢰					
법인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초빙위원회 추천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교수대표 15인(단과대학별로 선출)		교수대표 26인(단과대학별 1~3인+교협 추천 2인)		교수대표 15인	
	직원대표 3인		직원대표 9인		직원대표 4인	
	학생대표 3인		학생대표 4인		학생대표 2인	
	법인대표 4인		법인대표 및 사회지도층인사 5인		예수회대표 4인	
	교우회대표 5인		동문회대표 5인		동문 대표 4인	
	총 20인		총 49인		총 29인	
후보자 추천	3~5인(가능한 한 외부인사 포함)		3~5인		3인 무순위 추천 (후보대상자가 5인 이하일 경우 2인 추천)	
기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사퇴할 경우 총추위는 그 결원을 충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안) - 주요 조항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추천단위”는 8개 단과대학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법학부 포함)과 그 외 대학원 등을 각각 1개 단위로 하는 총 10개의 단위를 말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제3조(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① 법인은 재임 중인 총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중략-

② 추천위원회는 교수대표 10인, 법인대표 5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지역공익대표 2인, 학생대표 1인의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대표는 표결권을 갖지 않는 참관인 자격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 추천 및 위촉)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다음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① 교수대표 위원은 추천단위마다 각 1인으로 하며, 각 단위 소속의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 추천한다.
- ② 법인대표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 ③ 직원대표 위원은 학교와 병원 각 1인으로 하며, 학교에서는 사무처장,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④ 동문대표 위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
- ⑤ 지역공익대표위원은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각 1인씩 추천한다.
- ⑥ 학생대표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제5조(추천위원회 1차 회의) 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는 위원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되, 위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하여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중략-

제7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윤리적 의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직 학교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전 이항에 대하여 위원 위촉 전에 <별첨 양식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총장후보자의 선정 등

제12조(총장후보자대상자의 추천) ① 총장후보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2개 이상의 추천단위에서 교수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수
- 2. 2개 이상의 추천단위에서 교수 10인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 ② 각 추천인은 총장후보대상자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총장후보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13조(총장후보대상자의 추천 공지 및 접수) ① 법인사무국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학내, 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추천 의뢰를 공지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선거운동 금지 및 후보대상자 제외) ① 총장후보대상자는 총장후보자 선정기간 동안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1차 심사)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 회의를 통하여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총장후보대상자 개인별로 2차 심사대상에의 포함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제16조(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2차 심사) 추천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총장후보대상자들에 대해 대학발전계획 등에 관한 소견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절차를 비공개로 실시하며, 실시 방법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총장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2차 심사를 거친 총장후보대상자 각각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총장후보대상자 중 다득표순으로 3인을 총장후보자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 중략 -

제18조(총장 임명) 이사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은 추천위원회가 2인 이하를 총장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 임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후보자대상자 추천의뢰 공지의 과정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및 집행) ① 이 규정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하되,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로부터 규정개정안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20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2조 제1항이 정한 6개월 이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수회 대의원 명단》

◇ 의장 : 이일영(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5281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공과대학	주동표	화공신소재	2386
	유연우	생명분자	2449
	박 범	산업정보시스템	2426
정보통신 대학	류기열	정보 및 컴퓨터공학	2636
	조중열	전자공학	2380
	이주엽	미디어학	1838
자연과학 대학	하영화	수학	2563
	민철기	생명과학	2621
경영대학	박호환	경영학	2723
	구형건	경영학	2706
인문대학	미정		
	김 현	국어국문학	2813

단과대학	성명	원소속	연구실
사회과학대학	안재홍	정치외교학	2791
	김영진	심리학	2768
법과대학*	소병천	법학	2767
	이준섭	법학	3785
의과대학	신승수	호흡기내과학	5122
	신호준	미생물학	5076
	안재홍	안과학	5255
	이재호	생화학	5053
	조재호	정형외과학	5224
	정영기	정신과학	5182
간호대학	송미숙	간호학	7013
단과대학 미소속	최기련	에너지시스템학부	2697

* 법과대학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대의원으로 소속변경 작업중임.

아주대학교 총장선임 규정(안) 공청회

※ 패널토의 : 직원노조, 의료원노조, 중동분회, 중학생회

● 일시 : 2009년 9월 30일(수) 오후 5시

● 장소 : 울곡관 대강당

● 대상 : 아주대학교 구성원 전원

● 주관 : 교수회

정도를 걷는 **아주**, 상식이 통하는 **대학**

아주대학교 교수회

재단 이사장은 대학을 농단하는 형태를 중지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박종구 전 차관은 아주대학을 떠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